

의안번호	2205216
의 퇴 인	정혜경 의원
회 답 일	2024.12.18.
추계번호	24B4775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)	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(이하 “노동조합”이라 한다)의 조직,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6조제1항 본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8조제1항 본문,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(제1항)	의무규정
		<삭 제>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(제2항)	의무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·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, 징계를 할 수 없음(제3항)	의무규정
		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·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됨. 다만,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됨(제4항)	의무규정
2	안 제3조의2(차별적 처우의 금지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합 조직, 가입 및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	의무규정
3	안 제4조(정치활동의 금지)	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	의무규정
4	안 제6조(가입 범위)	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(제1항) 2.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·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,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(다만, 교원은 제외한다), 경찰공무원 및 군무원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<삭 제>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(제2항) 1.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·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.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·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·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. 교정·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	의무규정
		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관리상 또는 정책결정상 책임을 가지는 고위직공무원의 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. 이 경우 가입이 제한된 고위직공무원은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5	안 제7조(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)	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,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전임기간 중 전임자의 보수는 노동조합과 교섭상대방이 자율적으로 정함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, 호봉이나 그 밖에 신분 및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(제4항)	의무규정
6	안 제7조의2(근무시간 면제자 등)	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(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)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, 교섭구조·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·의결하고,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. <단서 신설> 다만,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있어서는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부·처·청(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포함한다)을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로 봄(제3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7	안 제7조의3 (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 개)	정부교섭대표는 <u>전년도에</u>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 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,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</u> .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<u>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총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함. 다만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음(제2항)</u>	재량규정
8	안 제8조(교섭 및 체결 권한 등)	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, 근무 조건, 후생복지 등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<u>국회사무총장·법원행정처장·헌법재판소사무처장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·국무총리(행정부 대표한다)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정부교섭대표”라 한다)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(제1항)</u> <u><단서 삭제></u> <u>다만,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,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</u>	의무규정
		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,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. <u>행정부</u> 는 국무총리, 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부처의 장관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9	안 제9조(교섭의 절차)	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 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		<삭 제>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함(제4항)	의무규정
		<삭 제>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		<삭 제>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	의무규정
10	안 제10조(단체협약의 효력)	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<u>내용이 법률·조례의 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·추가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률·조례 개정안 또는 예산편성·추가경정안 제출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</u> (제1항)	의무규정
		정부교섭대표는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<u>내용이 명령·규칙의 개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개정하거나 그 개정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지체없이 개정을 요청하여야 함</u> (제2항)	의무규정
		<u>제1항의 성신행의무, 제2항의 개정 및 개정요청 의무를 게을리하거나, 이를 방해한 자는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</u> 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11	안 제11조(쟁의행위)	공무원의 업무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봄(제1항)	의무규정
		제1항의 업무 중 긴급한 대면창구나 국민의 생명·신체·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요 최소한도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(제2항 신설)	의무규정
		정부교섭대표와 노동조합은 제2항의 필요 최소한도의 업무범위, 필요 최소한도의 직무의 내용 및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(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)	—	• 미대상 － 개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3조의2(차별적 처우의 금지) 신설	—	• 미대상 －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합 조직, 가입 및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3	안 제4조(정치활동의 금지)	—	• 미대상 －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“정치활동”을 금지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“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”을 금지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법에 비해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－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4	안 제6조(가입 범위)	×	• 미첨부 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－ 본문참조
5	안 제7조(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)		
6	안 제7조의2(근무시간 면제자 등)		
7	안 제7조의3(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)	—	• 미대상 － 현행법은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,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			- 개정안은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출받은 자료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총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-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8	안 제8조(교섭 및 체결 권한 등)	—	• 미대상 -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- 개정안은 행정부는 국무총리, 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부처의 장관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9	안 제9조(교섭의 절차)	—	• 미대상 - 노동조합 교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10	안 제10조(단체협약의 효력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참조
11	안 제11조(쟁의행위)	—	• 미대상 -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,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등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- 개정안은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장 수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6조·안 7조·안 7조의2) 현행법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는 ‘근로시간면제 제도’를 운영하고 있음
 - (안 제6조)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및 군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, 고위직공무원도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 - －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노동조합 전임자의 담당하던 업무의 대체 인력 고용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
 - － 다만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근로시간면제자의 규모 및 이들의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대체인력의 규모 및 그들의 임금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(안 제7조) 개정안은 전임기간 중 전임자의 보수는 노동조합과 교섭상대방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－ 개정안의 시행으로 전임자의 보수가 증가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전임자의 보수는 노동조합과 교섭상대방이 교섭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보수액을 합리적으로 예측 및 산출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 - (안 제7조의2) 개정안은 행정부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있어서는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부·처·청을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로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－ 개정안의 시행으로 ‘근로시간면제자’가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장래에 발생할 ‘근로시간면제자’의 규모 및 이들의 근로시간면제 시간, 대체인력의 범위 및 그들의 임금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
- (안 제10조) 현행법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·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개정안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률·조례의 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·추가경정
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률·조례 개정안 또는 예산편성·추가경정안 제출
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
고(제2항), 이를 위반할 경우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(제3항)하는
내용임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,
이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1)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
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
 - 개정안은 예산의 편성·추가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편성·추가경정안
제출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등 예산이
수반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해
정해진 단체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결정되므로, 사전에 그 규모를 예측 및
산출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
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
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
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제2조(정의) 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
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"비용추계"
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 (이하 생략)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